

セミナー・研修役務委託契約書 세미나 및 교육 직무 위탁 계약서

株式会社〇〇〇〇〇 (以下「甲」という) と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以下「乙」という) とは、甲より乙に対する_____の研修役務 (以下「本役務」という) の委託について、次のとおり役務委託契約 (以下「本契約」という) を締結する。

〇〇회사〇〇〇〇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갑의 을에 관한_____교육 직무 (이하 '본 직무' 라 한다) 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第1条 (總則) 乙は、本契約に定めるところに従い本役務を受託するものとし、甲は、乙に対し本役務を委託し、乙に対しその対価を支払うものとする。

②乙は、本契約および本契約とともに締結される別紙役務仕様書に従い、本役務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甲および乙が事前に書面です承した場合は、インターネット回線等を利用した講演・研修の配信サービス (オンライン) により乙が本役務を提供できる。ただし、この場合、インターネット回線、配信ツール、著作権、免責事項の詳細について別途にオンライン仕様書を定めて従うものとする。

제1조 (총칙)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직무를 위탁하며, 갑은 을에게 본 직무를 위탁하고, 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②을은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별지 직무 사양서에 따라, 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갑 및 을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인터넷 통신망 등을 이용한 강연·교육 서비스(온라인)를 통해 을이 본 직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터넷 통신망, 전달률, 저작권, 면책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온라인 사양서를 정하여 따라야 한다.

第2条 (權利義務の譲渡) 乙は、本契約により生ずる権利または義務を第三者に譲渡し、または継承させてはならない。ただし、書面による甲の承諾を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2조 (권리 의무 양도) 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수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서면으로 갑의 승낙이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条 (再委託の制限) 乙は、本役務の実施を第三者に委託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あらかじめ書面による甲の承諾を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②乙が、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役務の一部の実施を第三者に委託する場合には、甲は、乙に対して、受託者の名称その他必要な事項の通知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3조 (재위탁 제한) 을은 본 직무의 수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단,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이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일부 수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탁자 명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지를 구할 수 있다.

第4条 (役務内容の変更) 甲および乙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契約相手方に対して書面による通知により役務内容の変更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により役務内容を変更する場合において、履行期間もしくは契約金額を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甲および乙は変更後の履行期間および契約金額について協議するものとし、当該協議の結果を書面により定める。

제 4 조 (역무내용 변경) 갑 및 을은 필요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 역무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역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행기간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변경 후의 이행기간 및 계약금액에 대하여 협의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한다.

第5条 (免責) 乙は甲に対して、本役務に関して何らかの結果を保証するものではなく、また、乙に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がある場合を除き一切の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する。

②本条第1項前項において、乙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が認められた場合において甲が損害を被ったとき、乙は、甲が直接かつ現実に被った通常の損害を賠償するものとし、賠償額は甲が支払い乙が受領した役務委託料の額を上限とし、その具体的な賠償金額は甲および乙が協議した上で定める。

제 5 조 (면책) 을은 갑에게 본 역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도 보증하지 않으며, 을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본조 제1항 전항에서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은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갑이 지불하며 을이 수령한 역무 위탁료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배상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第6条 (不可抗力) 天災地変、戦争、暴動、内乱、疫病その他の不可抗力、法令の制定・改廃、公権力による命令・処分、争議行為、輸送機関または通信回線の事故、その他甲または乙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事由（以下、「不可抗力」という）による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の全部または一部の履行遅滞または履行不能については、両当事者は責任を負わない。この場合、甲乙協議の上、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の全部または一部を解除または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金銭の支払債務は、不可抗力によっても免責されない。

②当事者は、不可抗力発生後に遅滞なくその状況を書面により本契約の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甲および乙は、通知後速やかに不可抗力発生的事实を確認し、その後の必要な措置について協議し定める。

③不可抗力が発生した場合でも、乙は合理的に実行可能なかぎり、本契約に定める義務の履行を続ける努力をするものとする。

④不可抗力により乙が履行期間に役務を完了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甲に対して遅滞なくその理由を明らかにした書面により履行期間の延長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ける延長日数は、甲および乙協議して書面により定める。

⑤不可抗力に起因して、乙に追加的経費が発生した場合、乙の請求を甲が調査のうえ、甲が負担すべき額に対しては甲および乙が協議して、書面により定める。

⑥第1項により、乙が不可抗力が発生したと確認した日を起点として、不可抗力により本役務が実施できない日が60日以上継続した場合、甲は、少なくとも30日前に書面により乙に予告通知のうえ、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⑦前項により解除がなされた場合には、第9条の規定を準用する。

제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전염병 기타 불가항력,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정의행위, 운송기관 또는 통신회선의 사고, 기타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한 사유 (이하 '불가항력' 이라 한다)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연 또는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금전 지불 의무는 불가항력에 의해서도 면책되지 않는다.

②당사자는 불가항력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상황을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 및 을은 통지 후 즉시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며,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 정한다.

③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을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을이 이행기간에 역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⑤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을에게 추가적 경비가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를 갑이 조사한 후 갑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을이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역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갑은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사전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전항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条 (支払) 乙は、役務を完了したとき、甲に対し別紙役務仕様書に定める委託金額の支払を請求するものとする。

②甲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受けたときは、請求書発行日から30日以内に、乙が指定する銀行口座に振込送金(振込手数料は、甲の負担とする)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なお、支払期限日が銀行休業日にあたる場合における支払日は前営業日とする。

③前項にかかわらず、甲および乙が事前に合意した場合に限り、甲は乙に現金の手交により委託金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の場合、乙は甲に対して領収証を交付する。

④甲の責に帰すべき理由により、本条の規定による委託金額の支払が遅れた場合には、乙は、未受領金額につき、遅延日数に応じ、年(365日とする)3%の割合を乗じた額の遅延利息の支払を甲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7조 (지불) 을은 역무를 완료한 경우 갑에게 별지 역무 사양서에 명시된 위탁금액의 지불을 청구한다.

②갑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송금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하여 지불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의 지불일은 전 영업일로 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현금으로 위탁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액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을은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연 당(365 일으로 한다) 3%의 비율을 곱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第 8 条 (役 務 委 託 者 の 都 合 に よ る 中 止) 本 契 約 第 6 条 に よ ら ない 甲 の 事 情 よ り、 乙 が 遂 行 す べ き 本 役 務 が 中 止 さ れ た 場 合、 乙 は 本 条 第 ② 項 ~ ⑤ 項 に よ り 違 約 金 を 請 求 で き る。 な お、 違 約 金 の 支 払 に 関 す る 条 件 は、 本 契 約 第 7 条 を 準 用 す る。

② 本 契 約 成 立 後、 役 務 提 供 予 定 日 の 1 0 日 前 以 内 に 中 止 し た 場 合 は、 委 託 金 額 の 全 額

③ 本 契 約 成 立 後、 役 務 提 供 予 定 日 の 1 1 日 前 ~ 2 0 日 以 内 に 中 止 し た 場 合 は、 委 託 金 額 の 5 0 % 相 当 額

④ 本 契 約 成 立 後、 役 務 提 供 予 定 日 の 2 1 日 前 ~ 4 0 日 以 内 に 中 止 し た 場 合 は、 委 託 金 額 の 3 0 % 相 当 額

⑤ 本 契 約 成 立 後、 役 務 提 供 予 定 日 の 4 1 日 前 以 上 前 に 中 止 し た 場 合 は、 委 託 金 額 の 1 0 % 相 当 額

제 8 조 (역무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단) 본 계약 제 6 조에 따르지 아니한 갑의 사정으로 을이 수행해야 할 본 역무이 중단된 경우, 을은 본 조 제②항~⑤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약금 지급에 관한 조건은 본 계약 제 7 조를 준용한다.

② 본 계약 성립 후, 역무 제공 예정일로부터 10일 전 이내에 중단하는 경우 위약금액의 전액.

③ 본 계약 성립 후, 역무 제공 예정일로부터 11일~20일 전 이내에 중단하는 경우 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본 계약 성립 후, 역무 제공 예정일로부터 21일~40일 전 이내에 중단하는 경우 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본 계약 성립 후 역무 제공 예정일로부터 41일 이상 전에 중단하는 경우 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第 9 条 (解 除) 当 事 者 は、 以 下 の い ず れ か の 条 項 に 該 当 す る 事 由 が あ る と き は、 何 ら の 催 告 な し に 本 契 約 を 解 除 す る こ と が で き る。

① 当 事 者 が 振 り 出 し た 手 形 ま た は 小 切 手 が 不 渡 事 故 を 起 こ し た と き。

② 当 事 者 に 差 押 え、 仮 差 押 え ま た は 競 売 の 申 し 立 て が あ っ た と き、 も し く は 租 税 滞 納 処 分 を 受 け た と き。

③ 当 事 者 が 破 産、 会 社 整 理 開 始、 会 社 更 生 手 続 開 始 ま た は 民 事 再 生 手 続 開 始 の 申 し 立 て が あ っ た と き、 も し く は 清 算 に 入 っ た と き。

④ 当 事 者 の 解 散 も し く は 営 業 の 全 部 ま た は 重 要 な 一 部 を 第 三 者 に 譲 渡 し よ う と し た と き。

⑤ 当 事 者 が 本 契 約 に 基 づ く 事 項 を 履 行 し ず、 相 手 方 が 相 当 の 期 間 を 定 め て 催 告 を 受 け た に

もかかわらず、なおその期間内に履行しないとき。

⑥相手方に対して背信行為があったとき。

⑦相手方に公序良俗に反する行為があり、他方当事者が取引の継続を不相当と認めたとき。

제 9 조 (해지)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당사자에게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거나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③당사자가 파산, 회사정리 개시, 회사회생 절차 개시 또는 민사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④당사자가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⑤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상대방에게 배신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⑦상대방에게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 상대방이 거래의 지속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第10条 (反社会的勢力の排除) 当事者は、それぞれ相手方に対し、次の各項の事項を確約する。

①自らが、暴力団、暴力団関係企業、総会屋もしくはこれらに準ずる者またはその構成員(以下、「反社会的勢力」という)ではないこと。

②自らの役員(取締役、役務執行社員、また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が反社会的勢力ではないこと。

③反社会的勢力に自らの名義を利用して、この契約を締結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

④本契約期間が終了するまでに、自らまたは第三者を利用して、本契約に関する次の行為をしないこと。

ア 相手方に対する脅迫的な言動または暴力を用いる行為

イ 偽計または威力を用いて相手方の役務を妨害するか、信用を毀損する行為

⑤当事者の一方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場合には、相手方は何らの催告なしに本契約を解除できる。

ア 本条①項または②項の確約に反する申告を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

イ 本条③項の確約に反して本契約を締結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

ウ 本条④項の確約に反した行為をした場合

⑥前項の規定により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解除された当事者が解除に伴い発生した損害について、その相手方に対し一切の請求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

제 10 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약속한다.

①자신이 조직 폭력단, 조직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꾼,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그 구성원(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 한다)이 아님을 확인한다.

- ② 자신의 임원(이사, 업무집행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이 반사회적 세력이 아닐 것.
- ③ 반사회적 세력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닐 것.
- ④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인 또는 제 3 자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 관한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가.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 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 ⑤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본조 ①항 또는 ②항의 확약에 반하는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나. 본조 ③항의 확약에 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다. 본조 ④항의 확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⑥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당사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 11 条 (資料等の取扱い) 本役務遂行のために乙が作成したスライドや配布資料等(以下、「資料」という)の著作権は、本役務実施後も乙に帰属する。ただし、甲が作成して乙が使用した資料の著作権は、甲に帰属する。

- ② 前項に関わらず、甲は、別段の定めのない限り、著作権が乙に帰属する旨を明記した上で、_____を目的とする、甲内部(甲の役員および従業員であり、関連会社や取引先は除く)に限定した使用に限り資料等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前項の場合において、乙が作成した資料、講義録(録音または映像媒体に固定されたものを含む)、研修要旨を利用して編集、加工、翻訳等を行うことで、甲が別の資料(以下、「編集著作物」という)を作成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乙に対して内容確認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する。
- ④ 乙は、甲から個別の承諾を得ることなく、乙が作成した資料を利用できるものとする。
- ⑤ 当事者が作成した資料を相手方当事者が利用する場合は、当事者が著作権者である旨の著作権表示をおこなう。また、編集著作物を作成する際は、相手方当事者が編集者または監修者である旨の編集著作権表示を加えて併記するものとする。
- ⑥ 本条の各規定は、本契約を解除した場合についても、これを準用する。
- ⑦ 本条の各規定は、当事者の内部(役員および従業員)についても、これを準用する。

제 11 조(자료 등의 취급) 본 의무 수행을 위해 을이 작성한 슬라이드 및 배포자료 등(이하 '자료'라 한다)의 저작권은 본 의무 수행 후에도 을에게 귀속된다. 단, 갑이 작성하여 을이 사용한 자료의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이 을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후, _____를 목적으로 할 갑의 내부(갑의 임원 및 직원, 계열사 및 거래처는 제외)에 한정된 사용에 한하여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을이 작성한 자료, 강의록(녹음 또는 영상매체에 고정된 것 포함), 교육

요지를 이용하여 편집, 가공, 번역 등을 함으로써 갑이 별도의 자료(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을에게 내용 확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을은 갑으로부터 별도의 승낙 없이 을이 작성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⑤각 당사자가 작성한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저작권자임을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편집자 또는 감수자라는 편집저작권 표시를 추가하여 병기한다.

⑥본 조의 각 규정은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본 조의 각 규정은 당사자의 내부(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第 12 条 (秘密の保持) 機密情報とは、有形無形を問わず、本契約に関連して当事者から他方当事者へ提供された技術上、営業上、人事上その他役務上の一切の知識および情報を意味する。

②当事者は、機密情報の取扱いに関する契約（以下、「秘密保持契約」という）を本契約とは別に別途締結することとする。機密情報の具体的範囲は、秘密保持契約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③本契約の締結以前に別に秘密保持契約が締結されている場合、当事者の合意により有効な秘密保持契約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仕様書にその旨を明記する。

제 12 조 (기밀유지) 기밀정보의 정의는, 유형, 무형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상, 영업상, 인사상, 기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가리킨다.

②당사자는 본 계약과 별도로 기밀정보의 취급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한다. 기밀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효한 비밀유지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양서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第 13 条 (個人情報) 「個人情報」とは、乙が本役務を遂行するために、甲が乙に預託した一切の情報のうち、個人の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または個人識別符号が含まれる情報、並びにこれに付随して取り扱われるその他の情報をいい、前条に定める秘密情報であるものに限らない。

②甲および乙は、本役務の遂行に際して、個人情報を取り扱う場合には、それぞれ、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および本契約の定めを遵守して、本役務の目的の範囲において個人情報を取り扱うものとし、本役務の目的以外に、これを取り扱ってはならない。

제 12 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의는,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맡긴 모든 정보 중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정보, 및 이에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기타 정보를 말하며, 전조에서 정한 기밀정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②갑 및 을은 본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정보

(현해농재통상 서식 4 호)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본 계약 각 조항을 준수하여, 본 역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본 역무의 목적 이외에는 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第 14 条 (協議事項) 本契約に定めなき事項または解釈上疑義を生じた事項については、法令に従うほか、当事者が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をはかるものとする。

제 14 조 (협의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는 것 이외로,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한다.

第 15 条 (合意管轄) 前条によっても紛争が解決されない場合、本契約に関連する一切の訴訟管轄は、当事者のうち訴訟を提起した側の住所を管轄する裁判所とする。

제 15 조 (소송관할) 전조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관할은,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第 16 条 (契約期間) 本契約の有効期間は、契約締結日より 20XX 年 XX 月 XX 日までとする。
②本契約の延長については、契約満了の 1 か月前までに当事者が協議のうえ、契約期間を取り決めるものとし、別途書面にて契約を締結する。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XX 년 XX 월 XX 일로 한다.
②본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以上、本契約締結の証として本書 2 通を作成し、甲乙記名捺印の上各 1 通を保管する。
이상과 같이 본 역무 위탁계약 체결의 증표로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며,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契約締結日 계약체결일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甲갑 : ○○회사 ○○○○
(○○会社○○○○)
○○도○○시○○로 XXX 번길 XX
(○○道○○市○○路 XXX 番ギル XX)

代表대표 ○○○ (인 또는 서명)

乙을 : 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福岡県福津市中央 5 丁目 6 - 3 0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중앙 5 가 6 번 30 호)

이시자카 야키라 (인 또는 서명)
代表 石坂 晃 (印または署名)

(현해농재통상 서식 4 호)

別紙研修役務委託仕様書 (本契約書第 1 条、第 7 条、第 12 条関連)

별지 업무 위탁 사양서 (본 계약서 제 1 조, 제 7 조, 제 12 조 관련)

この仕様書は〇〇会社〇〇〇〇 (以下「お客様」という) が、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以下「弊社」という) に委託する_____研修役務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である。
이 사양서는 〇〇회사〇〇〇〇 (이하 '고객님' 이라 한다) 과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이하 '당사' 라 한다) 에 위탁하는 _____교육 업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委託業務名위탁 업무 명칭「_____」

講義강의、 세미나세미나、 その他기타 (以下必要事項について이하 필요 사항에)

2 委託業務期間위탁 업무 기간

契約日계약일~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業務終了日起點업무 종료일 기준 X 日일)

3 委託業務内容위탁 업무 내용

(1) 研修等のねらい・目的교육 등의 목적

- ・ _____
- ・ _____
- ・ _____

(2) 研修等の概要교육 등의 개요개강 기간

①期間기간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計計 X 日間일간

1 日目첫날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2 日目이틀째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②研修時間교육 시간 XX : XX~XX : XX (休憩휴식 XX : XX~XX : XX)

③開催形態개최 방식

対面のみ대면 만 : 〇〇会社회사 〇〇本社본사 〇〇室실 (〇〇道도 〇〇市시 〇〇洞동 XXX)

온라인、 하이브리드 (別添仕様書記入別첨 온라인 사양서 기입)

④受講人数수강자 수 XX名程度인 정도고

⑤内容내용 研修目的に沿う内容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 その他기타(_____)

⑥対象대상 お客様의 고객님의 _____이며 _____을를 担当담당하신 職位직위 _____의 方분

4 契約条件계약 조건

(1) お客様が行う業務고객님께서 하실 업무

会場設営회장준비 : 映写機영사기、 パソコン컴퓨터、 마이크마이크、 演台연단、
 その他기타 (_____)

(현해농재통상 서식 4 호)

- 募集案内모집 안내、 参加者の申込・受付참석자 접수、
- アンケートの作成・集計양케트 작성 집계、 その他기타 (_____)

(2) 弊社が行う業務당사 담당 업무

① 講師派遣とそれに係る各種調整연사 파견과 관련 중성 업무

- カリキュラム調整교육과정 조성、 各種手配각종 수배、 研修中調整교육 현장 조성

② 事前打合せ사전 협의

- 頻度빈도 : X회회、手段방법 : 메일메일、 웹會議웹미팅、 対面대면

③ 研修に必要な資料等の準備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 준비

弊社作成成分당사 작성

- レジюме 요약서、 スライド슬라이드 (XX枚장)、 その他資料기타 자료 (XX枚장)

お客様提供分고객님 제공

- レジюме 요약서、 スライド슬라이드 (XX枚장)、 その他資料기타 자료 (XX枚장)

④ アンケートの配布・回収 (お客様作成のものを研修時間内に弊社が配布し、回収後提出)

양케트 배포·회수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것을 당사가 교육시간 중 배포·회수·제출)

- 不要불요、 必要필요 (時期 : 終了後完료후、 その他기타 _____ 총 X회회 분)

⑤ 報告書の作成보고서 작성

- 不要불요、 必要필요 (X枚장、対象대상 : 参加者참석자、 その他기타 _____)

5 経費について비용에 관하여

(1) 役務委託料に含む内容역무 위탁 요금에 포함하는 내역

① 講師謝金사례금 (実働時間실동 시간 기준、端数끝수30分単位で분 단위로 調整반올림)

以下の弊社標準料金を使用する아래 당사 표준 요금을 적용함

講演강연 1時間시간 당5万円만엔+加算할증1万円만엔/1時間시간 =X万円만엔

(1時間ごとに시간 마다15分の質疑時間を設定분 질의 시간을 설정→実質실질75분)

세미나세미나 1時間시간 당4万円만엔+加算할증1万円만엔/1時間시간=X万円만엔、

(1時間は、講師による30分の説明と、研修参加者による30分のワーク等含む)

세미나 1시간은 연사의 30분 설명과 교육 참석자가 하실 30분 워크나 작업 등 포함)

お客様の規定で別途定めた単価表を使用고객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기준 사용

謝金計算계산 : 講演강연 X万円만엔 + 세미나세미나 X万円만엔 = X万円만엔 (税舍세포함)

② 教材の作成 (印刷は含まない) に要する費用교재 작성 (인쇄비 별도) 에 필요한 비용

作成言語작성 언어 : 日本語일본어、 韓国語한국어、

その他기타 (_____ 語어、資料翻譯は別途実費請求자료 번역은 실비용 청구함)

③ その他기타 : 各種打合せ각종 협의、アンケート양케트 관련、報告書作成보고서 작성

別添オンライン仕様書별첨 온라인 사양서 (本契約書第 1 条関連本 계약서 제1조 관련)

1 オンラインで行う研修方式の概要 온라인으로 할 교육 방식의 개요

라이브配信 실시간 전송、 録画配信 녹화 전송、 その他기타 (_____)

(1) 리허설의 유무 리허설 여부

なし없음 あり있음 (かかった時間により謝金が加算 실시간에 따라 사례금 할증)

(2) 質疑応答とその方式질의 응답 및 그 방식

あり있음 (下のにもチェック아래 에도 체크)、なし없음

方式방식 参加者참석자 : テキスト送信문자 송신・音声送信음성 송신

弊社당사 : テキスト回答문자 회답・音声回答음성 회답

(3) その他기타

オンラインのみで開催の場合、セミナー方式での役務提供はできないことを確認しました。

온라인 만으로 개최할 경우, 세미나 방식의 역무 제공이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ライブ配信の場合 실시간 전송의 경우 (ハイブリット*開催は除く 하이브리트 방식 제외)

(1) 講師出張강사 출장 : あり있음 (ご指定 지정 장소 _____)、なし없음

(2) 別途実費について 별도로 필요한 비용

上記「仕様書」と同じ상기 '사양서'와 같음、異なる다름 (_____)

3 録画配信の場合 녹화 전송의 경우

(1) 配信方式전송 방식

オンデマンド方式온 디맨드 방식 (一定期間内であればいつでも見れるよう設置しておく
方式정해진 시간내라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식)

疑似ライブ方式유사 실시간 전송 방식 (あらかじめ撮影・編集した録画データを決めら
れた時間に配信する方式 미리 촬영, 편집한 녹화를 정해진 시간에 전송하는 방식)

(2) 韓国語での配信をご希望の場合 한국어의 전송을 원하실 경우

弊社では、韓国語で録画配信する場合は、講師肉声の配信ではなく、あらかじめ入力した
文字情報を音声読み上げソフトで出力して提供する方法のみで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당사는 한국어에서 녹화 전송할 경우는, 강사 육성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미리 입
력한 문자 정보를 텍스트 음성 변환 시스템으로 출력하여 제공할 방식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4 하이브리트 방식의 경우

本契約は、対面での研修が主体であり、それに付随してハイブリット方式で行う場合は、すべての通信環境等をお客様の責任で準備・確保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본 계약은 대면에서의 교육이 주이며, 이에 부수하여 하이브리트 방식에서 할 경우는, 모든 통신 환경 등을 고객님의 책임으로 준비·확보하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5 全てのオンラインによる役務に共通した確認事項 모든 온라인 교육 업무 확인 사항

参加者への配信（および資料配布）環境確保はお客様が責任を持って構築し、万一配信等ができなかった場合も弊社はその責を負わず、委託料の減額をしないことを確認しました。

□참석자에게 전송 (및 자료 배포) 환경의 확보는 고객님의 책임으로 구축하며, 만약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탁 요금 할인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本契約において弊社がオンラインで提供するすべての資料・スライド・音声の著作権は弊社にあります。したがって、お客様は、研修受講者に対して著作権法の規定を遵守させるよう、注意喚起する責任が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また、著作権侵害事案が発生した場合、事案解決のため、お客様が弊社に研修受講者等の情報提供を行うことを約束します。

□본 계약에서 당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할 모든 자료·스라이드·음성의 저작권은 당사가 소유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께서는 교육 참석자에게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책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님의께서 당사에 참석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この契約書書式は、契約や納品に対する大まかなイメージをお客様に把握していただくことを目的としてPDF形式で提供しているものです。実際の契約に際しては、お問い合わせ後にWORD形式の契約書書式を別途お送りします。WORD形式の書式にお客様がお望みの事項をお書きになれる範囲でご記入頂き、弊社にご返送ください。

* 본 계약서 양식은 고객님의 계약 및 납품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PDF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문의 후 WORD 형식의 계약 서식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WORD 형식 서식에 고객님의 원하시는 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당사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